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10.

농림축산식품부
(농촌산업과)

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은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시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나, 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제출 기간을 충분히 확보코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 보완 요구 기간 연장(안 제9조제7항)

○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“14일”을 “2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완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신청절차 등) ① ~ ⑥ (생 략)	제9조(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신청절차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 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 터 <u>14일</u>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	⑦ ----- ----- -- <u>20일</u> ----- ----- --.
⑧ · ⑨ (생 략)	⑧ · ⑨ (현행과 같음)